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15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성일종·최수진·장동혁

박덕흠 • 김정재 • 인요한

고동진 · 서지영 · 최보윤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급증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 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 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14조제1항 후단ㆍ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으로서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임상교수 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과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과병원이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 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으로
	서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
	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
	공 임상교수요원(이하 이 조에
	서 "공공임상교수요원"이라 한
	<u>다)을 둘 수 있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과병원의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7조(출연금 등) ①・② (생	제17조(출연금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과병원이 제7조제6호의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u>있다.</u>

_		
	/ >11	コト
(3)	(생	략)
(·) /	1 2	$\rightarrow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제1항부터 제3항까지